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5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665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부동산신탁 주식회사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7. 7. 5.
판 결 선 고	2017. 7. 26.

주 문

1.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292,679,690원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220,361,400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111,395,980원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22,036,130원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5

1. 처분의 경위

가. [redacted]실크밸리 주식회사(변경 전 [redacted] 주식회사, 이하 '[redacted]실크밸리'라 한다)는 2011. 11. 25. 및 2012. 4. 23. 원고와 사이에 [redacted]시 [redacted]면 [redacted]리 산138-9 외 4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법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redacted]실크밸리는 이 사건 토지 일원에 대중제 27홀 [redacted]실크밸리CC 골프장을 조성하여 2013. 8. 5. 위 골프장에 관하여 신규 체육시설업 등록을 마치고 2013. 9.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하였다.

다. [redacted]실크밸리가 이 사건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redacted]실크밸리에 대하여 2013. 11. 8. 위 취득세 등 납세고지를 하고 2014. 1. 2. 위 취득세 등 체납에 대한 압류통지를 하였다. 이에 [redacted]실크밸리는 2014. 2. 27. 위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19.부터 2015. 10. 23.까지 [redacted]실크밸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자는 수탁자인 원고임에도 위탁자인 [redacted]실크밸리가 이를 신고 ·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6. [redacted]실크밸리에 대하여 기 신고 · 납부한 취득세 등 환급을 결정 · 고지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본세 893,598,58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78,719,7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20,361,400원 합계 1,292,679,690원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 89,359,85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2,036,130원 합계 111,395,980원을 부과 · 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5

지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2. 23. '이 사건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수탁자인 원고이나, [redacted]실크밸리가 위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하여 이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잘못이고,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 등의 관련규정에 대한 해석,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redacted]실크밸리가 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수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비롯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의 취득세 납세의무 주체에 관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5

점, 피고가 위탁자인 [redacted]실크밸리에 대하여 취득세 등 납부고지 및 압류통지를 하고 [redacted]실크밸리가 이를 모두 납부한 이상 수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에 조세심판원이 원고가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취득세 등 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 1)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4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의 경우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인데(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696 판결 등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5

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 · 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7조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이 규정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등 참조), 신탁의 종류가 담보신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5

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나) 앞의 1. 기재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1)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7조는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다가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게 되었으며,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 등 신탁업무에 있어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등(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8372 판결 등 참조), 신탁법상 신탁관계에서의 납세의무자는 각 세목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구체적 타당성에 기초하여 법리가 정립되어 있는데, 신탁관계에 있어서의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이 규정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서울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누14561 판결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5

(2) 이에 위탁자인 [redacted]실크밸리는 2013. 9. 23. 이 사건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과세관청인 피고 역시 이를 전제로 [redacted]실크밸리에 대한 징수절차 및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redacted]실크밸리는 2014. 2. 27. 위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한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스스로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세법 규정을 해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3) 조세심판원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원고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4)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유형의 가산세 면제요건을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하나의 조문에서 동일한 문구로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조세를 납부한 성실한 의무이행자와 사이에서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면제요건을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면제요건과 달리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3. 결 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5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복규

판사 이용희

판사 박보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5

관 계 법 령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9조(비과세 등)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5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신탁법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